

보도자료

2014. 3. 31.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김세종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①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간부분 부패범죄인 배임수증재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
-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금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종전 실무례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배임수재 유형에서, 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②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수정사항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의 정의규정

- 배임수재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다만,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 배임증제 유형의 특별감경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업무상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로 수정

②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법조브로커 활동 등 사법질서의 근간인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와 ②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부패범죄인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
- 배임수증제,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으로, 기존의 뇌물범죄, 금융범죄 양형기준과 더불어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완결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종전 실무례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특히,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 ①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나, ②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110조) 행위는 사법신뢰를 크게 해하는 범죄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별도 수정 없음

③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학대 등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마련
- 2014. 1. 28.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중상해·치사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대비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 마련
- 체포·감금범죄 유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를 범한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제한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수정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인자를 행위인자에서 행위자/기타인자로 이동
 - 특별가중인자 중 행위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행위자/기타인자로 이동

4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최근 기업형 성매매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성매매알선을 비롯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객관적 처벌기준을 마련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하여 종전 실무례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요 등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모든 성매매범죄유형), ② 피해자(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모든 성판매강요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유형), ③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터넷, SNS 등)를 이용한 알선**(모든 성매매알선 유형), ④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매매범죄 유형)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한편, **양형기준안 마련 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에서 이미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았던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유형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하고, ② '자발적 폐업' 또한 '모든 성매매 알선' 유형의 일반감경요소에서 삭제하였으며,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서도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이동하고, ④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이동하는 등 일반 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던 양형인자를 삭제 또는 축소 반영함으로써 더욱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시민활동가 등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수정사항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등' 유형의 '처벌불원'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등'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에서 삭제
- 19세 이상 및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의 '자발적 폐업'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등'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에서 '자발적 폐업'을 일반감경요소에서 삭제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의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서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사유에서 삭제하고, 일반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사유에 반영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의 '처벌불원'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사유에서 삭제하고, 일반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사유에 반영
- 19세 이상 및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의 특별가중인자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등'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의 특별가중요소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추가

㉔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이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2013. 4. 5.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약취·유인범죄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게 됨
-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구성요건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 되어 주로 중전 유형을 새롭게 재배치하거나 신설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 수정이 이루어 짐

○ 한편, 양형인자와 관련하여서는 약취·유인범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범해지는 경우에 내부의 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수’ 외에 ‘내부 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 마련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수정사항**

● **세부유형의 명칭**

- 각 범죄 세부유형의 명칭에 ‘인신매매’를 추가, 예를 들어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로 수정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3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상향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3유형의 감경영역의 상한을 4년에서 4년6월로, 기본영역의 하한을 3년6월에서 4년으로 상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인자를 행위인자에서 행위자/기타인자로의 이동**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와 동일

6]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 2014. 4.

○ 시행시기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2014. 7. 1.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 2014. 10. 1.(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시행시기에 맞춤)

※ 다음 회의는 2014. 6. 9.(월) 16:00 개최 예정

I.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경과

1. 양형자료 분석

- 최근 5년 내지 7년 동안 선고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조사하여 양형자료 분석

2.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 양형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침
- 2013. 12. 23.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 2014. 1.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3. 의견수렴절차

- 2014. 1. 10. ~ 2. 10., 2014. 1. 24. ~ 2. 24. : 각 범죄군별로 총 27개 내지 38개 관계기관에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 주요 기관의 의견 회신받음
- 2014. 2. 17. :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일반 방청객의 의견 청취
- 2014. 3. 10. :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법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

4. 양형기준 및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의견수렴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4. 3. 31.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II.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배임수재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2. 배임증재 [법정형: 징역 2년 이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2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액이 큰 구간에서는 규범적 조정을 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배임수재의 경우 1)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배임증재의 경우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

III.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② 주요 특징

-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에서는, 1)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함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에서는, 1)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2)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변호사법 110조) 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함

I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1유형 포함 범죄 : 체포·감금,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공동체포·감금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1유형 포함 범죄 :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2유형 포함 범죄 : 중유기, 중존속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학대,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학대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3년	2년 - 4년	3년 - 5년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법정형 - 아동학대 중상해 : 징역 3년 이상,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2 주요 특징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중상해·치사’를 체포·감금, 유기·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형량범위 설정
- 체포·감금범죄 유형에서는,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등), 2)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4)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되,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
 한편, 체포·감금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와 결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함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유기·학대범죄 유형에서는, 1)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기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등), 3)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
-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학대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각 유형에 적절히 반영하여 가중처벌함

V.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①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5.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법정형 : 10년 이하(1유형), 1년 이상(2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나. 성매매 알선 등 [법정형 : 3년 이하(1유형), 7년 이하(2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6.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법정형 : 5년 이상(1유형), 7년 이상(2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법정형 : 7년 이하(1유형), 5년 이상(2유형), 7년 이상(3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2 주요 특징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경우, 법원의 양형 실무를 반영함과 아울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설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의 경우, 2013. 6. 19.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법정형을 아래와 같이 대폭 상향 ⇨ 상향된 법정형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유형
징역 5년 이하 ⇨ 징역 1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성판매강요) 유형
1유형 해당 범죄(14조 1항) : 징역 3년 이상 ⇨ 징역 5년 이상
2유형 해당 범죄(14조 2항) : 징역 5년 이상 ⇨ 징역 7년 이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성매매알선) 유형
1유형 해당 범죄(14조 3항, 15조 2항) : 징역 5년 이하 ⇨ 징역 7년 이하
2유형 해당 범죄(14조 1항 4호) : 징역 3년 이상 ⇨ 징역 5년 이상
3유형 해당 범죄(15조 1항) : 징역 5년 이상 ⇨ 징역 7년 이상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가중처벌되는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모든 성매매범죄유형에 반영)
 - 피해자(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모든 성판매강요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유형에 반영)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터넷, SNS 등)를 이용한 알선(모든 성매매알선 유형에 반영)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매매범죄 유형에 반영)
- 한편, 양형기준안 마련 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에서 이미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았던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유형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하고, ② '자발적 폐업' 또한 '모든 성매매 알선' 유형의 일반감경요소에서 삭제하였으며,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서도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이동하고, ④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이동하는 등 일반 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던 양형인자를 삭제 또는 축소 반영함으로써 더욱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시민활동가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는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

VI.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013. 4. 5. 형법 및 특가법의 약취·유인 범죄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기존의 일부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 발생

2 법률 개정 사항

- 형법에 단순 인신매매죄(형법 289조)를 신설하고, 장(章) 명칭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
- 피약취자 등 상해·치상/치사 범죄(형법 290조, 291조) 신설
- 피약취자 등 수수·은닉죄의 법정형 변경 및 모집·운송·전달 행위 처벌규정(형

법 292조) 신설

- 목적범, 상습범에 대한 형법 및 특가법 가중처벌 규정 수정 또는 삭제

3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 범위 수정 내용

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가. 유형분류

(1) 기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2)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개정 형법 규정(목적에 따라 가중처벌)에 따라 제2, 3유형을 신설(구성요건,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유형 세분)
- 기존의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유형(제2유형) 중 삭제된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범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특가법 5조의2 1

항 1호)을 수정 양형기준의 제4유형으로 존치

- 개정대상이 아닌 기존의 제3유형은 수정 양형기준의 제5유형으로 존치

나. 권고 형량범위 (※파란색 부분이 수정 또는 추가된 부분, 이하 동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4	비난 목적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신설된 제2, 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설정
- 개정대상이 아닌 제1, 4, 5유형은 기존 권고 형량범위 유지

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유형분류

(1) 기존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2)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2	피약취자 등 상해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 기존에는 대상범죄가 인질상해·치상(형법 324조의3), 약취·유인 후 상해 등(특가법 5조의2 2항 3호) 뿐이며 법정형도 동일(무기 또는 5년 이상)하여 목적에 따라 소유형을 분류함
- 개정 형법은 피약취자 등 상해(형법 290조 1항, 3년~25년)/치상(같은 조 2항, 2년~20년) 범죄를 신설
- 수정 양형기준은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피약취자 등 치상', '피약취자 등 상해' 범죄에 대하여 소유형(각 1, 2유형)을 신설하고,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있던 기존의 제1, 2, 3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수정 양형기준 제3유형에 배치

나.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 신설된 제1, 2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설정
- 제3유형은 법정형, 형량분포 통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제1유형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고, 비난 목적이 있는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3.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

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유형분류

(1) 기존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2)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 기존에는 대상범죄가 인질치사(형법 324조의4, 무기 또는 10년 이상), 약취·유인 치사(특가법 5조의2 2항 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범죄만으로 단일한 유형 설정
- 개정 형법은 피약취자 등 치사(형법 291조 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범죄를 신설
-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 양형기준과 같이 기존의 양형기준 대상범죄와 신설 범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나.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u>2년6월 - 5년</u>	<u>4년 - 7년</u>	<u>6년 - 9년</u>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u>미성년자</u>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신설된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및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새롭게 설정
- 개정대상이 아닌 제2유형은 기존 권고 형량범위 유지

4 양형인자 수정 내용

- 특별감경인자인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
 - 모집, 운송,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내용 반영
- 특별감경인자인 ‘자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취·유인범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범해지는 경우에 내부의 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
-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삭제
 - 형법, 특가법 개정 사항 반영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각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인자)로 추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 사항 반영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추가(제2 대유형인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한함)
 - 기존에 목적에 따라 소유형을 달리하여 처벌을 차별화하였으나, 형법 개정으로 ‘피약취자 등 상해/치상’ 범죄가 신설되어,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따라 소유형을 구별하면서 범행의 목적이 비난할 만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